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안 경 위

- 가. 발 의 자 : 송도호 의원
- 나. 의안번호 : 제447호
- 다. 발의일자 : 2019. 2. 7
- 라. 회부일자 : 2019. 2. 11

2. 제 안 사 유

- 최근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염 및 한파 발생은 재난 수준의 재앙으로 인식되면서 폭염과 한파로부터 저소득층 가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음.

따라서 현행 조례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진단 등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로부터 에너지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연료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복지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내 용

- 가. 에너지복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안 제3조제1항)

나.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빈곤층 등의 주거환경,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안 제26조의3 신설)

다.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6조의4 신설)

4. 참 고 사 항

가. 관련 법령 : 「에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5. 검토 의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실태조사, 에너지 진단 등의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로부터 에너지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함께 연료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복지 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 ‘에너지복지’에 관하여 정의(안 제3조제1항제8호)하고 시민 등과의 협력 강화 사항에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강화’를 포함(안 제26조제1항)하는 것은 현 서울시 정책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음.
- 현행 조례 제26조의2는 에너지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등 에너지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제26조의2(에너지복지 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에너지빈곤층 등의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에너지 공급 지원에 관한 사업
2. 태양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3.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4.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5. 그 밖에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안 제26조의3은 에너지빈곤층 등의 주거환경 및 에너지 수요 등에 대한 실태조사, 안 제26조의4는 에너지진단 및 에너지절약 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이는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